

의안 번호	2191	【울산 중구 국공립장애인아전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】 <b>심사 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: 2023. 11. 9.(목)
- 제출자: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: 2023. 11. 9.(목)
- 위원회 심사일자: 2023. 12. 4.(월)

## 2. 제안설명 요지(복지환경국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신규 설치하는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공립전문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
- 『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위탁 대상시설 :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개소
- 2) 위탁사무의 내용
  -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 전반
  - 그 밖에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- 3) 수탁자 선정방법 :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· 결정
- 4) 위탁기간 : 5년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, 제24조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보육 조례」 제11조, 제12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홍정식)

- 장애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본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제출한 동의안 임.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법령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 근 거 법 규

## 「영유아보육법」

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1.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
  2. 삭제
  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  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-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

**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**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 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)
  3.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 4.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  5. 어린이집 운영계획서(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)
-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수

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.

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, 어린이집 운영계획,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## 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[별표 8의2]

###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(제24조의2 관련)

#### 1. 일반기준

- 가.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.
- 나.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,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.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- 다.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의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### 「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」

제11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.

③ 제1항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.

1. 보육을 전담하는 등록 사회복지법인
2.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등록 비영리법인이나 단체
3.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12조제1항의 별

#### 표 4에 따른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

4. 법 제21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
- ④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사람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 라 한다)를 결정해야 한다.
-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기간,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고 위탁증서를 발급해야 한다.

**제12조(위탁기간)**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그 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에 따라 새로 선정된 수탁자의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